



경기도 공고 제2024-319호

「2024년 경기도 소재·부품·장비 탄소중립 기술사업화 지원」 참가기업 모집 공고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경기도 내 소재·부품·장비 기업 중 탄소중립 관련 기업에 특화하여 기업 수요에 맞는 기술사업화 촉진을 통해 친환경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2024년 경기도 소재·부품·장비 탄소중립 기술사업화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도내 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2024년 2월 7일

경기도지사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경기도 내 소재·부품·장비 기업 중 탄소중립 관련 기업에 대한 공정혁신·제품혁신 패키지 지원을 통해 글로벌시장 경쟁력 강화 및 저탄소 전환 실현
- 지원대상 : 2021. 3. 5. 이전부터 경기도 내에서 소재·부품·장비를 생산·제조·개발하고 있는 중소기업
 - ※ 법인사업자면 법인 설립연월일, 개인사업자면 사업자 등록일, 공장등록일 기준
- 지원규모 : 7개사 내외
 - 우수기업 3개사 최대 75백만원, 선정기업 4개사 최대 50백만원
 - ※ 총 사업비의 70%이내 도지원금 지원(기업 부담금 30% 이상)

○ 그린뉴딜 6대 분야 과제

※ 그린뉴딜 6대 분야 : 그린IT, 신소재, 신재생에너지, 탄소저감, 그린차량·선박·수송, 청정생산

※ 세부 기술분야는 [별첨2] 참고

구분	세부분야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연료전지	풍력
	IGCC	바이오매스	해양에너지
	태양열	지열	수소
탄소저감	CCS	Non-CO ₂ 온실가스 처리	원자력
	에너지저장	청정연료	히트펌프
	신광원 고효율 조명	소형열병합	에너지 다소비 기기 및 산업공정 고효율화
	핵융합	-	-
그린IT	LED	시스템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차세대 디스플레이	그린SW & 솔루션	그린 컴퓨팅
	그린 임베디드SW	사물인터넷(IoT)	스마트그리드
	3D프린팅	웨어러블	지능형로봇
	이차전지	디지털방송	무선통신
	방송통신네트워크	전자파	콘텐츠 제작기술
	저장장치	-	-
그린차량·선박·수송기계	친환경 자동차	저공해 고효율 차량	친환경 농기계
	친환경 선박	스마트 선박	첨단 철도
	친환경 개인 이동수단	고효율 해상물류	해사안전
	드론	-	-
신소재	초경량 마그네슘	Ionic Liquid 소재	나노탄소융합소재
	기능성 나노필름	농림수산자원 유래 천연소재	희토류자성소재
	고특성 알루미늄 소재	그린섬유 소재	광소자용 단결정 소재
	에너지하베스팅 소재	그린 고분자 소재	해양생명공학 소재
	의약소재	바이오플라스틱	-
청정생산	국제환경규제대응	무오염생산	자원순환
	해양광물자원	-	-

□ 지원내용 : 공정혁신 및 제품혁신

지원항목	세부내용	
공정혁신	에너지 및 자원 순환 개선, 자동화 및 저전력, 탄소 저감 효과 등을 위한 공정 및 환경 개선	
제품혁신	시제품개발	개발기술 제품화, 샘플제작, 금형제작, 지그, 목업 등 제작 지원
	지식재산권	해외특허(PCT포함), 국내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등
	제품규격인증	국내외 제품규격인증, 시험분석, 성능평가

□ 지원절차

지원 단계	세 부 내 용	주 체
사업공고('24.2월)	· '24년 소부장 탄소중립 기술사업화 지원사업」 공고	경기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하 경과원)
사업신청 / 서류검토('24.3월)	· 사업신청 · 서류 적격성, 지원자력의 적합성 등 검토	신청기업 경과원
서류평가('24.3월)	· 서류평가 : 재무상태, 고용증가 등	경과원
발표평가('24.4월)	· 전문가 평가를 통한 우수과제 선정평가 · 계획의 적정성, 기술성, 사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평가	분야별 산·학·연 전문가 평가위원회
법위반기업 조회('24.4월)	· 공정, 노동, 환경, 납세 관련 법위반사항 조회	경기도
원가분석('24.4~5월)	· 시제품 개발 등 해당 시 원가분석(생략 가능)	외부 전문기관
과제선정('24.5월)	· 평가를 모두 통과한 기업에 대해 지원예산 규모등을 고려하여 최종 지원기업 및 후보기업 확정	경기도, 경과원
수정 사업계획서 제출('24.5월)	· 원가분석 결과 반영된 사업계획서 제출 ▶ 제출서류 : 공문, 수정사업계획서, 견적서 등	주관기관 ← 경과원
협약체결('24.5월)	· 선정기업(후보기업) 오리엔테이션, 과제 승인 및 협약	경과원
사업비 지급('24.6월)	· 협약에 따라 도 지원금 지급 (이행보증보험 발급 필수)	경과원 ← 주관기관
진도점검('24.8월)	· 추진현황 점검(서면 또는 현장방문)	주관기관 ← 경과원 평가위원
사업완료('24.11월) 및 최종점검/평가('24.12월)	· 사업완료에 따른 최종보고서 제출 및 수정제출 · 과제 추진실적 및 현장점검(최종평가)	주관기관 ← 경과원 평가위원
사업비 정산('25.1월) 및 지정서 수여('25.1월)	· 위탁 회계법인을 통한 사업비 정산 및 잔액 반납 · 사업 완료한 선도기업 지정서 수여	주관기관 ← 경과원 경기도 ← 선도기업
결과보고('25.2월) 및 사후관리('25.2월~)	· 성과관리	주관기관 ← 경과원

2. 신청자격

기준일 : 접수 마감일(2024. 3. 6.) 기준

신청자격

유형	자격조건
필수조건 (①~⑤ 모두 충족)	① 접수 마감일 기준 3년 이상 경기도 내 '주사무소' 또는 '등록공장' 설치·운영 ② 소부장의 개발 제조 매출이 50% 이상 ※ 소부장 전문기업 확인을 받지 않은 기업도 신청가능 ③ 중소기업 기본법 상 중소기업 요건 충족 기업 ④ 제조업 업종 영위기업 ※ 사업자등록증명 내 제조업 명시 ⑤ 기업부설연구소(연구전담개발부서) 설치·운영
and	
선택조건 (①~③중 1개이상 충족)	① 연구전담요원 2명 이상 ② 직전년도 총 매출액 대비 R&D 지출 비중 2% 이상 ③ 벤처투자기관으로부터 투자 받은 금액이 5천만원 이상
지원제외	① 경기도 소부장 기업육성 지원사업, 대중소기업 기술교류 지원사업, 그린뉴딜 선도기업 기술사업화 지원사업 선정기업(2021~2023) ② 2024년 경기도 기술사업화 지원사업(스타기업 육성사업, 중소기업 비즈니스 융합성장 지원사업)에 선정된 기업 ※ 2024년 소부장 기업 육성 지원사업과 중복선정 불가 ③ 중앙정부 사업에 기 선정기업(월드클래스300/플러스, 소부장 강소기업 100, 소부장 으뜸기업, 글로벌 강소기업) ④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사업에 동일한 사항으로 참여(과제 진행) 중인 기업

3. 지원금액 및 기간·사업비

지원금액 및 내용 : 7개사 내외

※ 우수기업 3개사 최대 75백만원, 선정기업 4개사 50백만원

지원항목		세부내용
공정혁신		에너지 및 자원 순환 개선, 자동화 및 저전력, 탄소 저감 효과 등을 위한 공정 및 환경 개선
제품 혁신	시제품개발	개발기술 제품화, 샘플제작, 금형제작, 지그, 목업 등 제작 지원
	지식재산권	해외특허(PCT포함), 국내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등
	제품규격인증	국내외 제품규격인증, 시험분석, 성능평가

※ 총 사업비의 50% 이상을 **공정혁신** 또는 **시제품개발** 항목에 사업비를 편성 및 사용(소진) 원칙

지원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2024. 11. 30. 이내

※ 지원기간 내 탄소중립 및 탄소저감 진단 컨설팅 추진

기업부담금 : 총 사업비의 30%(현금) 이상 필수 부담

[참고 1] 사업비 계상 예시

구 분	도지원금	기업부담금	총 사업비
사업비	75,000,000원 이내	32,150,000원 이상	107,150,000원
계산식	도지원금 \leq (총 사업비 \times 0.7)	현금 \geq (총사업비 \times 0.3)	-

※ 기업부담금은 만원단위에서 올림 적용(예시, 32,142,857원 \Rightarrow 32,150,000원 작성)

4.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온라인 전산 등록 및 제출 : 2024. 2. 7.(수) ~ 3. 6.(수) 18:00까지

□ 신청방법(온라인만 가능)

○ 이지비즈(www.egbiz.or.kr) 온라인 신청

- ① 이지비즈(www.egbiz.or.kr) 회원가입 및 로그인
- ② 초기화면 통합검색 메뉴에서 해당 사업 검색
- ③ 공고문 하단의 '지원사업 신청하기' 버튼 클릭 후 신청서 내용 입력
- ④ 신청서 하단 증빙서류, 인증서 등록('나의서류함'에서 불러오기 가능)
- ⑤ 신청서 하단의 개인정보수집동의 '동의' 선택 후 '접수완료' 버튼 클릭

* 모든 신청서류는 신청기관 직인 또는 서명을 날인하여 스캔본 업로드

* 접수 마감일에는 접속 과부하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 접수를 권장하며 접수 마감일 18시 이후 접수 불가

* 제출된 계획서 및 서류, 전산에 등록된 내용 등이 허위, 위·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선정 취소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구비서류 목록

연번	서 식 명	해당 서류	
		필수	해당시
①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1부 (소정양식, 『붙임 1』참조)	0	
②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 사업자등록증은 불인정 * 홈택스(https://www.hometax.go.kr/)에서 공고일 이후 발급분 제출	0	
③	신청기업의 법인등기부등본 1부(공고일 이후 발급분 제출) * 법인사업자 필수 제출		0
④	기업부설연구소(또는 연구전담부서) 인정서 사본 1부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홈페이지(https://www.rnd.or.kr/)에서 공고일 이후 발급분 제출	0	
⑤	개인정보 이용(제공·조회) 동의서(소정양식, 『붙임2』참조)	0	
⑥	2021년~2023년 확정재무제표 각 1부. * 2021년~2023년 재무제표의 경우 필히 '표준재무제표증명' 필수 제출 * 2023년 확정재무제표 발급이 어려울 경우 재무제표 확인원(회계사·세무사 확인본) 원본 제출 * 선정기업은 2023년 확정재무제표 필수제출 (선정 후 별도 안내)	0	
⑦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2022년 12월 귀속분, 2023년 12월 귀속분) 각 1부. * 종사자수는 12월 귀속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명기된 간이세액 인원(근로소득) 만 인정 * 홈택스(www.hometax.go.kr) > My홈택스 > 세금신고내역 > 원천세	0	
⑧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 공고일 이후 발급분 제출	0	
⑨	산업재해율 확인서 1부. (최근 1년 조회)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http://certi.kosha.or.kr) / 문의처 : 1644-4544	0	
⑩	소부장 매출실적 확인서(소정양식, 『붙임 3』참조, 공인회계사/세무사 확인본)	0	
⑪	기업의 범위반 사실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소정양식, 『붙임 6』참조)	0	
⑫	공장등록증 사본 1부. * 제품혁신 : 본사가 아닌 공장이 도내 소재할 경우 제출 필수 * 공정혁신 : 필수 제출		0
⑬	신청자격 중 선택조건(1개 이상 충족 필수)에 해당하는 증빙자료 각1부. * 연구전담요원 2명이상(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연구인력 개발현황) * 2023년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2% 이상(소정양식, 『붙임 4』참조) * 벤처투자기관으로부터 투자받은 금액이 5천만 원 이상		0
⑭	가산점을 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증빙서류 각 1부 (6. 평가기준 참조)		0

- 구비서류 제출 시, 파일별 연번 부여하여 제출(예) 1.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필수서류 누락 시 **결격처리** 되므로 제출 전 반드시 확인 바람

5. 지원 제외기준

※ 지원(후보)기업으로 선정 및 협약된 이후 지원제한 사항이 확인된 경우, 지원제외 및 협약해약

- 접수 마감일(2024. 3. 6.) 기준, 신청기업 또는 대표자가 다음 각 호의 1개 이상에 해당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지원제외>

- ① 접수기간 내에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서류가 허위인 경우
- ② 민원야기, 임금체불, 환경오염, 불법공장 등 사회적 물의를 빚은 기업
- ③ 국세 및 지방세 등 세금 체납기업
- ④ 자본잠식 및 금융불량 거래처로 금융기관으로부터 규제 중인 기업
- ⑤ 휴·폐업 중인 기업 또는 가동 중에 있지 않은 기업
- ⑥ 법정관리 또는 화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 ⑦ 사업개시일이 3년 이상이고 2023년도 재무제표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기업
- ⑧ 2023년도 기준 자본을 완전히 잠식한 경우
※ ⑦~⑧ 항목의 경우 선정기업에 한하여 2023 재무제표 재확인 실시, 자격요건 미충족시 선정제외
- ⑨ 대기업·중견기업
- ⑩ 접수마감일 현재 신청기업 및 신청기업의 대표가 정부지원사업 등에 참여제한 등의 제재를 받고 있는 경우
- ⑪ 경기도 기업지원 사업의 법 위반기업 지원 제한 기준고시('24.1.19)에 의거 법 위반사실이 2회 이상 있는 경우
- ⑫ 경기도 소부장 기업육성 지원사업, 대중소기업 기술교류 지원사업, 경기도 그린뉴딜 선도기업 기술사업화 지원사업 선정기업(2021~2023)
- ⑬ 2024년 경기도 기술사업화 지원사업(스타기업 육성사업, 중소기업 비즈니스 융합성장 지원사업)에 선정된 기업
※ 소부장 기업 육성지원 사업 및 소부장 탄소중립 기술사업화 지원사업과 중복선정 시, 기업 의사에 따라 하나의 사업만 지원받을 수 있음
- ⑭ 중앙정부 사업 기 선정기업(월드클래스 300, 글로벌 강소기업, 강소기업 100 지정기업 등)
- ⑮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사업에 동일한 사항으로 참여(과제 진행) 중인 기업

6. 평가기준

□ 적격심사

- 서류검토 : 신청자격 및 결격사유 해당여부, 중복성, 제재사항 등
- 현장조사(필요시) : 기술개발 인프라, 사업화능력 등에 대해 현장 확인

□ 서류평가

- 재무상태(성장성, 수익성, 안정성 등), 고용증가 등

○ 서류평가 및 가산점을 합산하여 고득점 기업 순으로 목표 지원기업 수의 2배수 이내로 발표평가 대상으로 선정

○ 평가항목 및 배점

구분	계	성장성	수익성	안정성	윤리경영	고용창출	가산점
평가항목	소계	매출증가율	영업이익율	부채비율	산업재해율	고용증가율	-
세부기준	-	3년간 CAGR ((23년도 매출액/ 21년도 매출액) ^(1/2)-1)×100	영업이익 /매출액×100 (23년도)	부채총계/ 자본총계 ×100 (23년도)	기업 산업재해율 대비 동종업계 산업재해율 차이	23년 상시근로자수 /22년 상시근로자수 ×100-100	1건당 1점
배 점	106점	30점	10점	20점	10점	30점	6점

※ 최근 3개년도(2021~2023)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평가

※ 성장성, 수익성, 안정성의 경우 2022년 기준 중소제조업경영지표 평균지표 대비 등급평가

※ 고용창출의 경우 경기도 취업자수(고용) 증가율 대비 등급평가

[참고] 가산점 적용 기준 및 대상

- 가산점 적용기준

- ① 가산점은 건당 1점, 최대 6점으로 적용함
- ② 인증서 또는 지정서 등은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유효기간은 공고일[2024. 2. 7.]을 이후여야 함.

- 가산점 적용대상

- ① 경기도 핵심전략품목(「붙임 5」 참조)을 생산하는 기업
- ② 소재부품 전문기업 확인서 보유기업(소부장넷 <https://www.sobujang.net/>에서 발급분에 한함)
- ③ 경기도 유망 중소기업 선정기업(공고일 기준 유효기간 이내)
- ④ 경기도 일자리우수기업 선정기업(공고일 기준 유효기간 이내)
- ⑤ 경기도 착한기업 선정기업(공고일 기준 유효기간 이내)
- ⑥ 경기도 기술개발사업 종료 후 해당 아이템으로 사업화 추진 중인 기업(2020~2022 선정기업)
- ⑦ 대·중견기업의 자발적 구매협약 동의서 및 구매이행 계획서 제출기업 「붙임 7」
- ⑧ 경기도 산업단지 RE100 참여기업(공고일 기준 유효기간 이내)
- ⑨ 제품/품질/기업인증 : 환경신기술(NET), 녹색인증, 녹색기업, 환경기술성능확인, 우수환경산업체, 환경마크인증(Eco-Label), 환경성적표지, 순환자원품질표지, 탄소성적표지, 우수재활용제품인증, 환경경영체제인증[ISO14001] 등
- ⑩ 관련기술 지식재산권(출원 및 등록)

□ 발표 또는 서면평가

○ 서류심사를 통과한 기업에 한하며, 기술성 및 사업성 등을 평가위원단이 종합적으로 심사·평가

○ **평가항목** : 계획의 적정성, 기술성, 사업성 및 파급효과 등

※ **법위반 1회 기업에 해당할 경우 최종 발표점수에서 20% 감점(2회 이상일 경우 지원제외)**

법위반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별첨1 참고]

- **공모일 기준 2년 이내(2022.2.8. ~ 2024.2.7.)** 아래 각 분야별 법을 위반한 기업
(제한기준) : 법위반에 따라 법률에 규정된 행정처분 기준 처분, 과징금, 과태료
법위반에 따라 법률에 규정된 고소, 고발건은 사실확인 시 제한기준 적용
- (공정분야) :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표시광고법
- (노동분야) :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 (환경분야) : 폐기물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물환경보전법
- (납세분야) : 국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 심의·조정 결과에 따라 지원기업 수와 기업별 예산규모는 변경될 수 있으며, 선정 이후 허위자료 제출 및 자격조건 미달 시, 선정 취소 (차순위 기업 선정)

7. 기타사항

□ **사업에 참여하는 자 (기업, 대표, 책임자 등)는 아래 사항에 대해서 동의한 것으로 간주**

- 채무불이행 등 확인을 위한 신용조회
- 기 개발 유무 및 중복지원 방지를 위하여 신청사업계획서 제목, 개발목표 등에 대한 공시
- 수행기업은 산출된 제품·서비스가 수요처에서 사용되도록 노력해야 하며, 관련 성과활용조사 등을 위하여 3년간 경과원의 요청(조사)에 적극 협조해야 함.

□ **이행보증보험 가입**

- 본 공고에 의해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기업은 도지원금의 100%에 대해 협약 전 이행(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가입이 불가능한 경우 선정 취소될 수 있음(가입기간 : 별도 안내)
- 발급수수료는 사업비로 인정

□ **탄소중립 진단 협조**

- 진흥원과 탄소중립 진단 전문기관이 추진하는 선정기업 대상 탄소중립

및 저감 진단 관련하여 자료제공 및 현장진단 등에 적극 협조

□ 기업선정 취소

- 선정 및 협약체결 이후라도 아래사항 발생 시 기업선정 취소 가능
 - 사업공고 시 명시된 지원분야와 수행 내용이 상이한 경우
 - 제출한 기업 정보 및 사업비 등이 사업계획서 내용과 불일치하는 경우
 - 기업부담금 부담 등의 약속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 사업여건 변동으로 사업 수행이 불필요하거나 곤란한 경우
 - 신청기업의 귀책사유로 협약추진이 지연되어 종료시한 이내에 수행완료가 곤란한 경우
 - 사업 신청일 이후, 사전지원제외(신청자격 상실)에 해당하는 경우

□ 부당지원수혜자 제재사항

- 도지원금 및 기업부담금을 포함한 사업비의 부정사용(횡령 등) 적발시 지원금 전액환수 및 향후 경기도 지원사업에서 영구배제, 민형사상의 조치 등 실시
 -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 준용

8. 문의처

담당자	연락처	F.A.X.	E-mail.
사업화지원팀 서소희 대리	031)259-6496	031)259-6504	green@gbsa.or.kr

※ 이지비즈 시스템 문의 : 031-259-6299

※ 통화량이 많아 전화연결이 어려울 수 있으니 가급적 e-mail로 문의바랍니다.

[별첨1] 경기도 기업지원 사업의 법 위반기업 지원 제한 기준 고시

경기도 고시 제2024-22호

경기도 기업지원 사업의 법 위반기업 지원 제한 기준 고시

도내 기업의 건전한 기업 문화를 조성하고 기업 선정의 효율성,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경기도 법위반 기업에 대한 기업지원 제한 조례」 제6조에 따라 “경기도 기업지원 사업의 법 위반기업 지원 제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 1. 19.
경 기 도 지 사

1. 추진목적 : 기업의 법 준수 문화 확산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로 기업 간 공정한 경쟁과 기업 성장 경영문화 전환 등 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2. 적용대상 : 경기도 각종 기업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도내 기업
- (도내 기업) 주 사무소, 영업소, 생산시설 등이 도내에 있는 기업
3. 적용사업 : 도 각종 기업지원 사업에 대해 적용하되, 아래 제외·유예 사업에 대해서는 적용 제외
가. 제외·유예사업은 향후 법위반기업 지원제한 위원회 심의 및 상황에 따라 제한기준 적용 대상 사업으로 전환하여 적용될 수 있음
나. 사업유형별 적용제외·유예사업
 - 1) (계도·개선사업) 법령준수를 위한 계도와 개선 목적의 사업
 - 2) (사업운영비·소액사업) 예산용도가 사업운영비 한정, 소액·다수기업 지원사업
 - 3) (비경쟁사업) 기업수요가 비 상시적이고 기업 필요성에 따라 순차 지원 사업
 - 4) (자금·융자지원 사업) 자금 및 신용보증 지원사업으로 수익자가 부담
 - 5) (시·군 매칭(보조) 사업) 도비 보조 또는 매칭비율에 따라 시군 지원사업
 - 6) (소상공인 지원목적 사업) 소상공인 지원 및 목적 용도의 사업
 - 7) (투자유치 지원) 경기도 투자유치에 따른 지원(인센티브) 사업
4. 위반사실 적용법률 : 공정, 노동, 환경, 납세 분야 11개 법률
가. 적용법률
 - 1) (공정) ① 공정거래법 ② 하도급법 ③ 표시광고법
 - 2) (노동) ④ 근로기준법 ⑤ 산업안전보건법
 - 3) (환경) ⑥ 폐기물관리법 ⑦ 대기환경보전법 ⑧ 소음진동관리법 ⑨ 물환경보전법
 - 4) (납세) ⑩ 국세기본법 ⑪ 지방세기본법나. 위반 사실 적용 법률은 사업 부서별·사업 특성에 따라 지침·기본계획상 추가 운영 가능
5. 위반사실 조회기간 : 사업 공모일(모집일) 기준 2년 이내
가. 법 위반에 따라 법률에 규정된 행정처분 기준 처분, 과징금, 과태료
나. 법 위반에 따라 법률에 규정된 고소, 고발건은 사실 확인 시 제한기준 적용
6. 사업참여 제한조건 : 법 위반 사실 확인시(1회 이상) 평가 총점의 20% 감점 적용
가. 사업자 선정 후 과거 법 위반 사실 확인 시(법위반사실여부 확인서(서식2) 내용과 상이) 사업 취소·보조금 반환 및 3년 이내 도 지원사업 참여자격 제한
나. 사업자 선정 후 신규 법 위반 시 사업 부서별(사업별) 법 위반일 기준 사업취소 등 제한기준을 별도로 마련하여 적용할 수 있음
7. 법위반사실 확인 : 사업 부서에서 기업의 법 위반 사실 확인
가. (공정)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법위반조회발급/법위반사실조회)
나. (노동) 기업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지청
다. (환경) 기업 소재지 관할 시·군
라. (납세)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
8. 이의 및 구제신청 : 법위반사실로 제한기준 적용사실이 통보된 날로부터 7일 이내 대상자는 소명내용이 포함된 이의 및 구제신청서(서식3) 제출
가. 사업자선정위원회 등(실국 또는 수탁기관)에서는 이의신청 기한 경과 후 14일 이내에 이의 및 구제신청서 검토 후(필요시 기업 출석 소명) 사업자 선정전 구제여부 결정 및 통보
※ 기업의 권리구제, 행정절차 이행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결정 기한 연장 가능
나. 삭제
9. 제출서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서식1), 기업의 법위반사실(부존재) 여부 확인서(서식2)
10. 고시 효력일 : 고시일 ~ 차기 고시일 전까지
11. 문의처 : 경기도 경제투자실 기업육성과(☎ 031-8030-2995)

[별첨2] 신청 기술분야 인정범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01 신재생 에너지	01 태양광	01 태양전지 및 모듈제조용 소재
		02 태양전지
		03 모듈
		04 태양전지 및 모듈 생산 자동화 설비
		05 태양전지용 BOS (Balance Of system) 주변 기기
	02 연료전지	01 건물용 PEMFC (핵심소재)
		02 건물용 PEMFC (핵심부품)
		03 건물용 PEMFC (시스템 보조기기(BOP))
		04 건물용 PEMFC (시스템 양산제조기술)
		05 건물용 PEMFC (연료전지 생산용장비)
		06 분산발전용 MCFC (핵심소재)
		07 분산발전용 MCFC (핵심부품기술)
		08 분산발전용 MCFC (시스템 보조기기(BOP))
		09 분산발전용 MCFC (시스템 및 시스템양산제조기술)
		10 분산발전용 PAFC(인산염 연료전지)
		11 건물용 SOFC (구성요소 및 스택)
		12 건물용 SOFC (관련 BOP)
		13 SOFC (시스템)
		14 DMFC 핵심소재
		15 DMFC 핵심부품
		16 DMFC 시스템 보조기기(BOP)
		17 DMFC 시스템 및 시스템양산제조기술
		18 DMFC 생산용 장비
	03 풍력	01 풍력발전 시스템 요소부품
		02 풍력발전 운영/모니터링 시스템
		03 해상풍력
		04 풍력발전 시스템
	04 IGCC(석탄/중질잔유 복합발전)	01 가스화공정
		02 합성가스정제 및 개질
		03 합성가스 이용 플랜트
	05 바이오매스	01 바이오에탄올
		02 바이오부탄올
		03 바이오디젤
		04 바이오가스
		05 바이오 합성 가스
		06 동식물성 기름 기반 연료
	06 해양에너지	01 조력발전
		02 조류발전
		03 파력발전
		04 해수온도차 이용
	07 태양열	01 태양열 활용기기 기술
		02 태양열 소재 및 재료 기술
		03 중저온 태양열활용시스템 기술
		04 고온 태양열활용시스템 기술
	08 지열	01 지열냉난방 기술
		02 심부지열 개발기술
		03 심부지열 활용기술
	09 수소	01 수소 생산
		02 수소 이송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03 수소 저장
		04 수소 공급 인프라
02 탄소저감	01 CCS(Carbon Capture and Storage) 및 CCU(Carbon Capture and Utilization)	01 연소후 CO ₂ 포집플랜트
		02 연소전 CO ₂ 포집플랜트
		03 연소중 CO ₂ 포집플랜트
		04 CO ₂ 압축플랜트
		05 CO ₂ 저장플랜트
		06 CO ₂ 수송플랜트
		07 CO ₂ 이용 유용물질 생산플랜트
	02 Non-CO ₂ 온실가스 처리	01 환경기초시설발생 메탄이용/저감기술
		02 모니터링 관리시스템
		03 불화가스 저감
		04 N ₂ O 저감
	03 원자력	01 원자력노심 재료 및 핵연료
		02 원전 계통 및 안전
		03 원전제어계측 기술
		04 원전성능향상
		05 원전핵주기 및 방사선환경감시
		06 신형원자로 기술
	04 에너지저장	01 니켈-금속수소전지
		02 리튬이온전지
		03 리튬이온폴리머전지
		04 나트륨-황(NaS)전지
		05 레독스플로우(RedoxFlow) 전지
		06 초고용량 커패시터
		07 리튬이온 커패시터
		08 BOS(Balance of System) 기술
		09 리튬공기전지
	05 청정연료	01 석탄가스화
		02 석탄가스 정제
		03 석탄가스 액화
		04 천연가스 리포밍
		05 천연가스 유래 FT합성
		06 육상용 GTL 통합공정
		07 해상 GTL-FPSO 통합공정
		08 GTL FPSO 핵심기자재
		09 SNG 합성
		10 천연가스 유래 MeOH 합성
		11 천연가스 유래 DME 합성
		12 Upgrading 공정
	06 히트펌프	01 전기구동 히트펌프(EHP)
		02 열원구동 히트펌프(AHP)
		03 가스구동 히트 펌프(GHP)
	07 신광원 고효율 조명	01 실내용 LED 조명기기 및 부품
02 풀칼라 LED 감성 조명기기		
03 실외용 LED 조명기기 및 부품		
04 무전극 램프		
05 고효율HID램프		
06 OLED 조명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08 소형열병합	07 특수용 조명기기 및 부품
		01 스텔링엔진 열병합발전 기술
		02 소형 가스터빈 열병합발전
	09 에너지 다소비 기기 및 산업공정 고효율화	03 가스엔진 열병합발전
		01 시멘트 제조공정
		02 제철 제조공정
		03 제지 제조공정
		04 공업로
		05 건조기
		06 보일러·연소기기
		07 전동기
		08 조명기기
		09 냉난방기기
		10 가전기기
	10 핵융합	11 LNG 수송 기술
		01 핵융합 실증플랜트 통합 설계 기술
		02 핵융합 장치기술
		03 핵융합 에너지변환 및 수송계통
		04 핵융합 플라즈마가열 및 진단계통
05 핵융합 플라즈마수소연료 주기계통		
06 핵융합 실증플랜트 운전보수유지		
03 그린IT	01 LED	01 LED 칩
		02 마이크로 LED 칩
		03 LED 패키지
		04 LED 제조장비
		05 수송용 LED 광원 모듈
		06 의료/바이오/환경 LED 광원모듈
		07 디스플레이 LED 광원모듈
		08 스마트 조명시스템
	02 시스템 반도체	01 컴퓨터 반도체
		02 통신 반도체
		03 가전 반도체
		04 자동차 반도체
		05 전력반도체
		06 바이오 반도체
	03 메모리 반도체	01 DRAM/SRAM
		02 Flash/NVM
		03 New Memory
	04 차세대 디스플레이	01 대화면 AMOLED 디스플레이
		02 OLED 조명
		03 친환경 초절전 LCD
		04 플렉서블 디스플레이(전자종이 등)
		05 무안경 3D 기술
		06 신기능 융복합 디스플레이
		07 AR/VR
	05 그린 SW & 솔루션	01 IT기기 에너지 절감 솔루션
		02 에너지 소비 모니터링 및 최적화기술
		03 전동기제어솔루션
		04 전자문서관리
06 그린 컴퓨팅	01 그린컴퓨팅 하드웨어기술	
	02 그린컴퓨팅 소프트웨어 기술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03 그린클라우드 컴퓨팅기술	
		04 그린컴퓨팅 인프라 기술	
		05 지능형(AI) 컴퓨팅기술	
		06 빅데이터 컴퓨팅기술	
	07 그린 임베디드 SW		01 그린 임베디드 OS
			02 그린 임베디드 미들웨어
			03 초소형 운영체제 플랫폼
			04 임베디드 SW 개발도구
			05 CPS(Cyber Physical System) 컴퓨팅 플랫폼
			06 임베디드 인공지능
	08 사물인터넷(IoT)		01 개별물품 인식 RFID 및 IoT 센서
			02 IoT 센서 네트워크 구성 및 운용
			03 지능형 RFID/USN 및 IoT 미들웨어
			04 지능형 에너지 절감용 IoT 센서 네트워크 시스템
			05 사회/반사설 모니터링 IoT 센서 네트워크 시스템
	09 스마트그리드		01 스마트변전 시스템
			02 스마트송전 시스템
			03 AMI 시스템
			04 스마트배전 시스템
			05 DC/FACTS(Flexible AC Transmission System)
			06 ESS (에너지저장시스템)
			07 전기차 충전시스템
			08 HVDC (High Voltage Direct Current)
	10 3D 프린팅		01 장비
			02 소재
			03 소프트웨어
	11 웨어러블		01 액세서리형
			02 직물/의류 일체형
			03 신체부착형
			04 생체이식형
	12 지능형로봇		01 로봇시스템 설계기술
			02 로봇 부품 기술
			03 로봇 지능 기술
			04 로봇 인지기능 HRI (Human-Robot Interaction) 기술
	13 이차전지		01 초소형 박막 이차전지
			02 플렉서블 이차전지
			03 고체 전해질 전지
	14 디지털방송		01 방송 송출 기술
			02 방송 수신 기술
			03 방송 측정 기술
			04 방송 제작 기술
			05 방송 응용서비스 기술
			06 스마트 방송
	15 무선통신		01 이동통신
			02 TRS 통신
			03 LBS
04 근거리 무선 데이터 통신			
05 해상/항공/위성 무선통신			
16 방송통신네트워크		01 초고속 전송 네트워크	
		02 초고속 교환 네트워크	
		03 초고속 가입자 네트워크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04 홈 네트워크	
		05 지능형 사물통신 네트워크	
		06 인터넷데이터 센터(IDC)	
		07 양자 네트워크	
	17 전자파		01 전파응용
			02 전파지원 활용 기술
			03 전파기반
			04 전자파장해 보호
	18 콘텐츠 제작기술		01 영상·뉴미디어
			02 가상현실/증강현실
			03 공연·전시
	19 저장장치		01 HDD
			02 SSD
03 Tape Drive			
04 그린차량 · 선박 · 수송기계	01 친환경 자동차	01 하이브리드 자동차(플러그인 포함)	
		02 전기자동차	
		03 연료전지 자동차	
	02 저공해 고효율 차량		01 온실가스/배출가스 저감형 자동차
			02 신재생/저탄소연료/ 대체연료 자동차
			03 디젤 자동차
	03 친환경 농기계		01 농용 작업 기계
			02 농용 차량 및 트랙터
			03 축산기계
	04 친환경 선박		01 친환경 고효율 선박 및 기자재
			02 해양플랜트
			03 친환경 레저 보트
	05 스마트 선박		01 정보인프라 시스템
			02 이동/위성통신시스템
			03 e-Navigation 기반 운항정보 시스템
			04 무인·자율운항 통합관리시스템
	06 첨단 철도		01 차체/대차시스템 기술
			02 추진 및 열차제어 기술
			03 궤도/노반기술
			04 철도교량/터널기술
			05 급전/집전기술
			06 철도 환경기술
	07 친환경 개인 이동수단		01 경량 자전거
			02 전기 자전거
			03 전기 이륜차
			04 기타 개인 이동수단
	08 고효율 해상물류		01 물류시스템 계획 및 설계
			02 물류시설 및 장비
			03 물류운영 및 관리
	09 해사안전		01 해상교통안전
02 해양인적안전			
03 해양안전관리			
04 해상보안관리			
10 드론		01 해상드론 관련 기술	
		02 수륙양용드론 관련 기술	
05 신소재	01 초경량 마그네슘	01 고품위 마그네슘 원소재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소재	02 고기능 마그네슘 주조재
		03 고성형 마그네슘 판재
		04 고강도 마그네슘 형재
		05 고효율 마그네슘 융합소재
	02 Ionic Liquid 소재	01 전해질 소재
		02 분리정제 소재
		03 그린촉매공정 소재
		04 마찰저감 소재
	03 나노탄소융합소재	01 탄소나노튜브(CNT)
		02 흑연 나노섬유(GNF)/탄소 나노섬유(CNF)
		03 탄소섬유
		04 그래핀/그래핀 옥사이드
		05 융복합소재
04 기능성 나노필름	01 광학용 나노필름	
	02 열 응용 나노필름 및 소재	
	03 에너지변환 나노필름(농업용 필름 포함)	
05 농림수산자원 유래 천연소재	01 천연물 소재	
	02 기능 식품 소재	
	03 기능성 화장품 소재	
	04 기능성 바이오 소재	
	05 천연물 유래 식품첨가제	
	06 천연 사료첨가제	
	07 비료/농약 첨가물	
06 희토류자성소재	01 Nd계 희토류 소결자석소재	
	02 Nd계 희토류 본드자석소재	
07 고풍성 알루미늄 소재	01 친환경 알루미늄 원소재	
	02 고기능 알루미늄 주조재	
	03 고성형 알루미늄 판재	
	04 고강도 알루미늄 형재	
	05 고품위 알루미늄 재생 소재	
08 그린섬유 소재	01 자원 순환 녹색섬유소재	
	02 에너지저감형 녹색섬유소재	
	03 친환경 녹색섬유소재	
09 광소자용 단결정 소재	01 대구경 사파이어 단결정	
	02 질화갈륨 단결정	
10 에너지하베스팅 소재	01 압전하베스팅 소재	
	02 기타 에너지하베스팅 소재	
11 그린 고분자 소재	01 폴리케톤 원소재	
	02 폴리케톤 컴파운드 소재	
	03 산업용 폴리케톤 부품	
	04 폴리케톤 원사	
	05 폴리케톤 섬유제품	
12 해양생명공학 소재	01 해양생물소재	
13 의약소재	01 단백질 의약품	
	02 치료용 향체	
	03 백신	
	04 유전자 의약품	
	05 재생 의약품	
	06 천연물 의약품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07 저분자 의약품
		08 개량 의약품
		09 나노의학소재
		10 미생물 제제
	14 바이오플라스틱	01 바이오플라스틱 개발
		02 바이오플라스틱 활용
		02 플라스틱 대체소재
	03 플라스틱 재활용	
06 청정생산	01 국제환경규제대응	01 유해물질 저감 및 대체
	02 무오염생산	01 유니(Uni) 소재
		02 그린프린팅 제품
		03 그린 프로세스(E2) 제품 E2 : Ecological and Economical
		04 무 배출 그린생산
		05 청정융합
	03 자원순환	01 자원순환(HM2, Hidden Materials Mining)
		02 재제조(Remanufacturing)
		03 에너지·자원순환네트워크(생태산업단지)
	04 해양광물자원	01 바다모래 채취기술
		02 해양 용존 금속 회수기술